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442
----------	------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 상정일자 :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1. 제안이유

-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 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

-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함
- 이에, 2019년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소재지 : 노원구 동일로 231 다길 10 (상계동1071-2)
- 규 모 : 대지 521.2m² / 연면적 1,683m²(지하1층~지상5층)
- 준공일 : 2020. 6.(예정)
- 공간구성(안)

구분	면적(㎡)	용도
지상	5층	사무공간, 직원휴게실
	4층	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3), 교재교구실
	3층	요리교실 등 다용도 활동공간, 전문인력교육장 겸용
	2층	열린 놀이공간,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실(4개), 작은 휴식공간
	1층	안내, 후정 놀이터, 독서·휴식공간, 보호자 대기공간, 관리실 등
지하	1층	다목적 체육놀이실, 현관, 내외부 창고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0. 6월 ~ 2025. 5월(5년)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조직 및 운영(안) : 4팀, 21명 (센터장 1, 종사자 20)

센터장(1)
운영총괄

기획예산팀(4)	돌봄운영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 · 조직, 인사, 예산·결산, 지출, 총무 ·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구성 및 운영 · 문·예·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운영
돌봄자원연계팀(3)	시설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 안전관리 및 건물·주차장 관리 · 차량관리 및 운행

○ 위탁사무 내용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물품 관리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
-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
-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

○ '20년 소요예산 : 1,06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33호, 2019.3.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계획」
(아이돌봄담당관-5588, 2019.4.29.)
- 「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 - 10676(2019.8.23.))
- 「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조직담당관-11925, 2019.9.19.)
- 제1,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제290회 정례회, '19.12.1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변경계획」
(아이돌봄담당관-2365, '20.2.14.)
- 2020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4002, '20. 3.25.)

라. 민간위탁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000m² 이상 규모의 복지시설로 20~25명 수준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 ·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 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 지난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동의안(의안번호 1180의 중요사항 중 하나인 민간위탁기간의 변경(3년→5년)에 대한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 검토 사항

□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²⁾(제4조의4)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로 민간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동의안 구성의 주요사항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 바, 민간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제출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민간위탁기간의 변경의 타당성

- 동의안이 제출된 주요사유는 민간위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동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센터로 선정(아이돌봄담당관-4873, 2020.3.26.) 된 바 있음.
 -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사업명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 수행 센터로 선정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³⁾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⁴⁾에서 사회복지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민간위탁기간 변경(3년→5년)은 타당하다 할 것임.

□ 그 외 민간위탁동의 추진과정의 문제점

- 2019월 3월 개정된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제5항)⁵⁾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동 동의안의 대상인 거점형 키움센터 2개 소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 상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구 분	(가칭)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예 산 편 성 사전절차로 의 회 동 의 미이행 사유	<p>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월 제287회 정례회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후 지역별 돌봄수요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 발굴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8월경 대상지 확정과 운영 가능성이 구체화 되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반영 즉시, 적정 지역 분석과 물건확보를 조속히 진행하긴 했으나 시기적인 한계가 있어- '19.8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9.6.)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고, 이에 부득이 거점형키움센터 1호점에 대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예외적으로 동시 상정하게 되었음

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게다가 금번 동의안 역시, 서울시의 중점 추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거점형)키움센터의 기본적인 시설 유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확인 없이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보건복지부의 통보를 받아 그 사례가 전무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동의안 재제출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호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엄중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⁶⁾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제44조의2)⁷⁾ 및 「서울특별시 온

6)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8)에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하고 있는 바, 방과후 초등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 거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⁹⁾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문화·예술·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 일반형·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¹⁰⁾에서 돌봄시설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거점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 10)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4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판단되어 지난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나,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사업명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수행기관으로 선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민간위탁해야 하고 이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사항 중 하나인 위탁기간의 변경(3년→5년)이 발생하여, 이례적으로 동일한 민간위탁 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구성요건 상의 하자는 없다할 것임.
- 다만, 민간위탁 동의 절차와 과정을 고려해보면, 기본적인 시설 유형에 대한 명확한 검토나 확인 없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받는 행태는 집행부가 부실한 사업 계획에 따라 안일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할 것임.
 - 이에 의회의 기능을 무마시키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엄중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442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
- 나.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아이 돌봄 기관·지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함
- 다. 이에, 2019년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로 선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소재지 : 노원구 동일로 231 다길 10(상계동1071-2)
- 규모 : 대지 521.2m² / 연면적 1,683m²(지하1층~지상5층)
- 준공일 : 2020. 6.(예정)
- 공간구성(안)

구분	면적(m ²)	용도
지상	5층	사무공간, 직원휴게실
	4층	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3), 교재교구실
	3층	요리교실 등 다용도 활동공간, 전문인력교육장 겸용
	2층	열린 놀이공간,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실(4개), 작은 휴식공간
	1층	안내, 후정 놀이터, 독서·휴식공간, 보호자 대기공간, 관리실 등
지하	1층	다목적 체육놀이실, 현관, 내외부 창고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0. 6월 ~ 2025. 5월(5년)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조직운영(안) : 4팀, 21명 (센터장 1, 종사자 20)

센터장(1)
운영총괄

기획예산팀(4)	돌봄운영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 조직, 인사, 예산·결산, 지출, 총무·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구성 및 운영· 문·예·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운영
돌봄자원연계팀(3)	시설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및 건물·주차장 관리· 차량관리 및 운행

○ 위탁사무 내용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물품 관리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
-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
-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

○ '20년 소요예산 : 1,06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33호, '19.3.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운영계획」 (아이돌봄담당관-5588, '19.4.29.)
- 「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 10676('19.8.23.)
- 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조직담당관-11978, '19.9.19.)
- 제1,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90회 정례회, '19.12.1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변경계획」 (아이돌봄담당관-2365, '20.2.14.)
- 2020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조직담당관-4002, '20. 3.25.)

라. 민간위탁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000m² 이상 규모의 복지시설로 20~25명 수준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아이돌봄담당관 초등거점조성팀 이다림 (☎ 2133-7152)